

청소년증 안내

○ 청소년증이란?

만 9세~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하면 발행되는 증으로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통해 교통 수단·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



※ 근거 :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(청소년의 우대) 및 제4조(청소년증)

○ 청소년증 용도 및 혜택

-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

※ 외국어능력시험, 검정고시, 자격증,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

- 청소년이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

※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 가능

<청소년 할인혜택 현황(예시)>

- 수송시설 : 버스(고속버스 제외) 지하철 20%, 여객선 10% • 공·릉 : 50%
 - 박물관 : 면제~50% 내외 • 미술관 : 30~50% 내외 • 공원 : 면제~50% 내외
 - 공연장(자체기획공연) : 30~50% 내외 • 유원지 : 30~50% 내외 • 영화관 : 1,000원 등
- ※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 혜택은 다를 수 있음

○ 청소년증 사용시 준수사항

-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
<청소년증 발급절차>



○ 협조 요청사항

-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들에게 할인 및 우대혜택 적용

※ 청소년증은 연령확인 증빙자료로 인정되므로,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들에게 할인 및 우대혜택 적용 요청

- 청소년증 홍보물을 귀 기관 및 소속(산하)기관 등에 안내 및 홍보 요청

※ 소속(산하)기관 또는 회원단체 등에 동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